

조선총독부관보(朝鮮總督府官報) 호외(號外) 1 1933(昭和 8)년 10월 1일 일요일

○ 고 시(告示)

조선총독부고시(朝鮮總督府告示) 제482호(號)

1932(昭和 7)년 조선총독부고시(朝鮮總督府告示) 제686호(號) 내지·조선 간 발착하물통관취급규칙(內地朝鮮間發著荷物通關取扱規則) 중(中) 아래[左]와 같이 개정(改正)함.

1933(昭和 8)년 10월 1일 조선총독(朝鮮總督) 우가키 가즈시게(宇垣一成)

제2조(條) 본(本) 규칙(規則)에서 세관소재역(稅關所在驛)이란 아래[左]의 역소(驛所)를 말함.

조선총독부철도국선(朝鮮總督府鐵道局線)

대구(大邱), 경성(京城), 평양(平壤), 신의주(新義州), 신의주하급소(新義州荷扱所), 마산(馬山), 목포(木浦), 군산(群山), 인천(仁川), 진남포(鎭南捕), 원산(元山), 성진(城津)

남만주철도주식회사 북선철도관리국선(南滿洲鐵道株式會社北鮮鐵道管理局線)

청진(淸津), 회령(會寧), 상삼봉(上三峰), 남양(南陽), 웅기(雄基)

제3조(條) 및 제4조(條) 중(中) 「남양(南陽)」을 삭제(削除)함.

제21조(條) 부산(釜山), 마산(馬山), 여수항(麗水港), 목포(木浦), 군산(群山), 인천(仁川), 진남포(鎭南捕), 원산(元山), 성진(城津) 또는 웅기역(雄基驛) 경유(經由) 내지(內地)·조선(朝鮮) 간(間) 발착철도(發著鐵道), 항로(航路: 남조선철도주식회사항로[南朝鮮鐵道株式會社航路]를 포함[包含]함) 연대운송하물(連帶運送荷物)의 운수기관(運輸機關)에 있어서 통관취급(通關取扱) 방면에 대해서는 전(前) 각조(各條)의 규정(規定)을 준용(準用)함. 단(但) 출입소하물(出入小荷物)에 대해서는 제6조(條)제2항(項)의 규정(規定)을 준용(準用)하지 아니함. 하송인(荷送人)은 모두 제7조(條)에 준(準)해서 하물명세서(荷物明細書)를 제출하는 것으로 하고, 또 여수항역(麗水港驛) 경유(經由) 하물(荷物)에 대하여는 제3조(條)에서 제5조(條)까지 규정(規定)을 준용(準用)하지 아니함. 조선출입수속(朝鮮出入手續)은 운수기관(運輸機關)에서 대변(代辯)하는 것으로 함.